

의안번호	제2020-1차
의결일자	2020년 02월 14일

이 사 회 의 사 록

주식회사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이 사 회 의 사 록

1. 일 시 : 2020년 2월 14일(금) 오전 10시
2. 장 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19층 내 회의실
3. 출석인원 : 법인이사총수 1명 출석법인이사수 1명
감독이사총수 2명 출석감독이사수 2명

(주)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본 회사” 라 한다)의 의장인 법인이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직무수행자로 선정된 운우진은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4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.

의 안 1. 주식인수 승인의 건

의장은 의안1. 주식인수 승인의 건에 관하여 배부한 이사회 자료를 통하여 설명한 후,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1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의 안 2. 여유자금 운용의 건

의장은 의안2. 여유자금 운용의 건에 관하여 배부한 이사회 자료를 통하여 설명한 후,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2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의 안 3.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의 건

의장은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결의해 줄 것을 제의하자 출석이사들은 만장일치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결의사항 :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.

일 시 : 2020년 2월 21일(금) 오전 10시

장 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19층 내 회의실

의 안 : 제1호 의안 : 주식인수 승인의 건

의장은 이로서 금일 의안이 전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.

상기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다.

2020년 2월 14일

주식회사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

의장/법인이사 주택도시보증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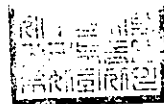
감독이사 오 중

감독이사 양 관

배부자료 : 제1차 이사회 자료

2020년 제1차

이 사 회 자 료



주식회사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(주)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2020년 제1차 이사회 자료

◇ 일 시 : 2020년 2월 14일(금) 오전 10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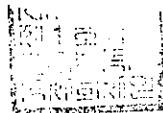
◇ 장 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19층 내 회의실

◇ 안 건

안건 1 : 주식인수 승인의 건

안건 2 : 여유자금 운용의 건

안건 3 :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의 건



안건 1	주식인수 승인의 건
------	------------

□ 안건 개요

혁신지구리츠 최초설립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한 혁신지구리츠(고양성사, 천안역세권)의 설립자본금에 해당하는 주식을 앵커리츠가 인수하는 건에 대하여 정관 제31조에 의거 이사회 부의

제31조(법인이사의 직무)

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4.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
□ 인수대상 및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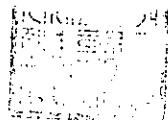
주택도시기금이 혁신지구리츠의 설립시 출자한 주식 총 120,000주를 아래와 같이 6억원으로 인수할 예정

(단위 : 원, 주)

구분	법인명	액면가(A)	발행주식총수(B)	매입금액(A*B)
1	(주)고양성사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	5,000원	60,000주	300,000,000원
2	(주)천안역세권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	5,000원	60,000주	300,000,000원
계			120,000주	600,000,000원

□ 인수절차

주식인수에 대한 앵커리츠제1호의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후 앵커리츠제1호와 혁신지구리츠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



첨부1. 혁신지구 리츠 설립자본금 인수 추진계획

첨부2. 주식매매계약서

안건 2	여유자금 운용의 건
------	------------

□ 안건 개요

기금 출자예산 집행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의 운용 기준 및 방안에 대하여 정관 제31조에 의거 이사회 부의

정관 제31조(법인이사의 직무)

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10.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주요 사안

□ 운용기준

- 유동성, 안정성, 수익성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용기준 수립
 - 유동성 : 단기자금으로 운용
 - 안정성 : 확정금리형 상품
 - 수익성 : 금융기관의 제시금리가 높은 순으로 예치

□ 운용방안

- 일정 현금성자금은 MMDA에 보유하고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등 운용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운용
- 금융상품, 운용만기, 금융기관 선정 등은 AMC에서 주관*하고, 국토부에 분기별 및 수시 보고

* 자금운용 규모, 운영기간, 금융기관 선정 등은 리츠자산관리센터장 전결로 추진

2020년 1월 14일
 도시재생벤처1호
 제1차 이사회

안건 3

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

□ 2020년 제1회 임시주주총회 소집

1. 주주총회 개최일시 : 2020년 2월 21일(금) 오전 10시
2. 주주총회 개최장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19층 내 회의실

□ 2020년 제1회 임시주주총회 부의 안건

제1호 의안 : 주식인수 승인의 건

[주주총회 제1호 의안 : 주식인수 승인의 건]

“이사회 안건 1” 참조.

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(거래의 제한)

-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1.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
 2.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.
 3. 그 밖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

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4조(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)

-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”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.
 1.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「상법」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